공급망 행동규범

1. 개요 (Overview)

1.1 목적 본 행동규범은 산일전기(이하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준수해야 할 윤리, 인권, 노동, 안전보건, 환경 및 경영시스템의 기준을 정의합니다.

1.2 적용 범위 본 규범은 회사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협력회사에 적용되며, 협력회사는 자신의 하위 협력회사(2, 3차) 또한 본 규범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1.3 준수 원칙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며, 법규와 본 규범의 기준이 상이할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인권 및 노동 (Human Rights & Labor)

2.1 자발적 근로 및 강제노동 금지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노예 제도, 인신매매, 부채 상환을 위한 강제노동 등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합니다.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주 근로자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2 아동노동 금지 및 연소자 보호 만 15세 미만(또는 현지 법정 최저 연령)의 아동 고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야간 및 초과 근무, 고위험 업무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2.3 근로시간 및 임금 현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며, 정해진 날짜에 급여 명세서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2.4 차별 및 괴롭힘 금지 인종, 성별, 종교,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채용 및 승진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성희롱, 체벌, 폭언 등 일체의 비인도적인 대우를 금지합니다.

2.5 결사의 자유 현지 법규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3. 안전 및 보건 (Safety & Health)

3.1 작업장 안전 관리 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장치 및 방호벽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2 비상사태 대비 및 사고 관리 화재,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3 보건 및 위생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조리 및 식사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4. 환경 (Environment)

4.1 환경 인허가 및 법규 준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하며 최신 법규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4.2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화학물질의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배출량을 최소화하며 재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3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ESG 공시 핵심) 전사적인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 2)을 측정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 및 이행해야 합니다.

5. 윤리 및 공정거래 (Ethics & Fair Trade)

5.1 투명 경영 및 반부패 일체의 뇌물, 부패,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실천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합니다.

5.2 책임 있는 자재 조달 (분쟁광물) 인권·환경 보호를 위한 분쟁광물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하며, 회사와 고객사의 광물 사용 정보 공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3 정보보호 및 지식재산권 회사 및 고객사의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및 공급망 실사 (Management System & Due Diligence)

6.1 경영진의 책임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본 규범의 이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고위 경영진을 선임해야 합니다.

6.2 공급망 실사 대응 및 협조 협력회사는 회사가 직접 또는 제3자 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서면 점검 및 현장 방문 실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6.3 고충 처리 및 제보자 보호 윤리 및 인권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